

입 법 공 청 회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
•

일시 : 2005년 8월 22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입 법 공 청 회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
•

일시 : 2005년 8월 22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 차

순 서	2
발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의 내용과 이해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 정책연구원)	3
별첨 1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21
별첨 2 현행호적법과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조문대조표	40

(인)을출판한것은아무도행하지
|행공헌유용성|

최고의 위의와 성공을 위한
공공공헌유용성지향공헌발견

순서

○ 인사말

- 노회찬 국회의원

○ 사회자

- 범용(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의 내용과 이해]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 정책연구원)

○ 지정토론

-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김종민 (대법원 호적과장)
-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종합토론

발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의 내용과 이해

윤 현 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 정책연구원)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입법배경

○ 호주제의 폐지와 민법의 개정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는 취지로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¹⁾
-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금번의 민법 개정은 민법 중 특히 친족편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친족편만으로 볼 때에는 기존 법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도 될 정도의 규모였음
- 이번 민법개정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호주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와 관련된 제 규정의 일체 삭제, 가족범위의 재규정, 부부 합의에 의한 자녀의 성씨 결정, 친양자 제도의 도입 등이 있음
- 가족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녀의 성씨를 결정하는 과정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1958년 2월 22일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우리 민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이라는 평가가 가능

○ 현행 호적법의 문제점

- 현행 호적법은 9개의 장과 140여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각 장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호적부, 제3장 호적의 기재, 제4장 신고, 제5장 호적의 정정, 제5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6장 불복절차, 제7장 벌칙, 제8장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호적법은 호적을 “같은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호적의 편제)
- 또한 호적부라는 하나의 공부에 개인의 이력은 물론 가족의 이력사항 일체를 함께 기록

1) 2001헌가9 ~ 15, 2004헌가5(병합)

-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비록 등본과 초본으로 공부를 나누어 발급하는 것으로 가족 전체의 이력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없는 실정
- 현행 호적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두 번째 문제로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음
- 세 번째 문제는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위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음.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짐

○ 호적제도의 대대적인 개정 필요

- 실제법인 민법이 친족편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개정된 결과 민법상 신분관계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호적법의 체계 역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
-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현행 호적법상 호주의 승계, 입적, 취적, 복적 등의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며, 친양자 신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특히 민법개정과 더불어 현행 호적법은 “첫째,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둘째,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셋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유지 관리, 넷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원칙을 충실하게 만족시키기 위한 구조로 변화되어야 함
- 이 네 가지 원칙은 현행 호적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임
- 이 네 가지 원칙 이외에 “민족적 전통의 유지” 또는 “국민정서의 수용” 등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족적 전통이 무엇인지 또는 국민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원칙은 앞의 네 가지로 충분하며 이 원칙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현행 호적법의 구조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도입된 구 일본호적제도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외국의 입법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함

□ 입법과정의 주요경과

○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사회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결성

-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있어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 설정
- 2003년 9월까지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

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

- 2003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목적별공부안'을 대안으로 하여 각종 워크숍 개최, 각 신분등록제 대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의 활동 전개

○ 2005년 2월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으로 연대조직을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입법활동을 전개

- 국회공청회 등에서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무부 안과 대법원 안과 목적별공부안을 비교하는 작업 진행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 통과
- 2005년 8월 까지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성안작업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

1. 법안의 구성체계

○ 총 7개장 123개 조문으로 구성

장	절	조문	주요내용 및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시읍면장이 사무를 관장 · 소재지 가정법원이 감독 · 대법원 규칙 조항을 총칙 장에 규정
제2장	신분에 관한 공부	제9조~제20조	· 공부를 본인 기준으로 목적별로 작성(제9조) · 현행 호적법상 전산처리에 관한 규정과 수기규정 통합 · 신분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기준 규정 · 신분변동에 관한 공부의 여람 및 교부기준 규정 · 가족증명원의 교부기준 규정 · 목적별공부 분류 및 기재사항 규정 · 가족증명원 기재사항 규정
제3장	신분에 관한 공부의 기재	제21조~제25조	· 목적별 공부의 기재절차 및 신규등록, 정정 등
제4장	제1절	제26조~제48조	· 신고인, 신고장소, 신고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통칙		
	제2절	제49조~제59조	· 출생의 신고에 관한 절차

출생		· 혼인의출생자의 신고인에 대한 규정 삭제
제3절 인지	제60조~제65조	· 인지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4절 입양	제66조~제68조	· 입양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5절 과양	제69조~제72조	· 과양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6절 친양자	제73조~제76조	· 친양자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7절 혼인	제77조~제79조	· 혼인의 신고에 관한 절차 · 자녀에 대한 성씨결정의 합의 제출 규정
제8절 이혼	제80조~제83조	· 이혼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9절 친권 및 후견	제84조~제88조	· 친권 및 후견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9조~제97조	· 사망 및 실종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98조~제103조	· 국적의 취득, 상실, 국적회복 등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12절 개명	제104조~제105조	· 개명의 신고에 관한 절차
제5장 공부의 정정	제108조~제110조	· 공부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
제6장 불복절차	제111조~제115조	· 신분관련사건에 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의 절차
제7장 처벌	제116조~제123조	·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처벌 강화 ·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처벌 강화

2. 법안의 주요내용

▲ 법률의 명칭을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로 정함

▲ 목적별공부에 관한 사무의 관장을 현행 호적법과 같이 시읍면장이 행하도록 하며(안 제2조), 사무의 감독을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의 장이 하도록 함(안 제4조)

▲ 법률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함(안 제8조)

▲ 신분에 관한 공부의 작성은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이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 공부의 정리와 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 중심의 사무로 일원화함(안 제10조~제14조)

▲ 신분에 관한 공부와 신분변동에 관한 공부 및 가족증명원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 목적별 공부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안 제18조), 각각의 공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9조),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20조)

▲ 민법 제908조2 이하 규정의 신설에 따라 도입되는 친양자제도의 절차규정을 설치(제6절)

▲ 현행 호적법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식별자로 사용되고 있는 본적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규정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

▲ 출생신고, 국적신고 또는 창성이나 개명과정에서 신고토록 되어 있는 본(本) 개념 삭제

□ 법안의 주요사항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목적별 공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법취지

- 이 법률은 신분관련 개인정보의 등록절차와 그 증명에 관한 법률임
- '신분'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 있으며, 특히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에 '등록'토록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 따라서 '신분' 및 '등록'이라는 용어가 최대한 사용되지 않는 방향에서 법률의 명칭을 고려함
- 현행 호적법 역시 신분관련 개인정보의 등록절차와 그 증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호적법'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도 호적관련법률에 신분 또는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건별 증명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 본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신분에 관한 증명의 형식을 목적별로 하고 있는 바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로 정함

- 제1조는 이 법이 목적별공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증명사무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천명

제2조 (사무의 관장)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 (감독) ①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②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신분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입법취지

- 목적별공부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로서 그 사무의 관장권한이 행정기관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새로운 신분등록관련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법무부가 사무의 관장과 감독권한을 법무부가 담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사법부의 관장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나 그렇다면 왜 굳이 법무부가 그 담당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적관계규정 등의 경우 법무부가 그 사무의 관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기타 신고 및 증명원의 발급의 경우 그 사무의 관장이 법무부에 의해 이루어져야할 필연적인 원칙은 없고 오히려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관장하는 현재의 구조가 더욱 타당할 것임
- 또한 현행 호적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호적전산화사업 및 그 사무의 감독이 대법원의 지휘 아래 있는 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더불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전 국민의 가장 민감한 신분정보 일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이들 정보를 수사에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등 대단히 위험한 일로서 경계됨
- 따라서 현행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목적별공부에 관한 사무 역시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감독권한을 현행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내의 가정법원에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를 존치하는 것이 필요함

제2장 신분에 관한 공부

제9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작성) 출생, 사망 또는 혼인 등에 관한 공부 또는 그 변동에 관한 공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이를 작성한다.

○ 입법취지

- 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으로 주로 사용되는 각 공부는 불필요한 가족의 정보를 함께 담고 있을 명백한 이유가 없음
- 따라서 모든 공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족 등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개인의 신분이력사항을 하나의 공부에 일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특히 신분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호적부는 이러한 보호의 정도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었음
- 따라서 신분에 관한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사건마다 따로 공부를 작성하여 필요할 때 목적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공부를 목적별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 둘째, 부당히 차별에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게 됨. 셋째, 각각의 공부를 열람하고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시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행정사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제15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출생·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청구인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해당 증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 안의 각 증서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및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각 증서에 등재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 입법취지

- 본 규정은 출생·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현재의 신분상태를 증명하는 공부를 열람 또는 증명서를 교부받는 절차에 관한 규정임
- 현재의 신분상태를 증명하는 공부의 경우에는 오직 본인의 현재 상황만을 보여줄 수 있

- 도록 기록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교부조건 등을 두지 않음
- 다만 본인 이외의 자가 열람이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사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열람 및 교부를 사전에 차단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이 다른 시읍면에서도 각각의 공부를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입양 · 파양 · 친양자 · 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증서는 다음 각호 이외에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다.

1. 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
 2.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된 사항이나 교부된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법취지

- 본 규정은 입양 · 파양 · 친양자 · 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공부를 열람 및 증명서를 교부받는 절차에 관한 규정임
- 입양 · 파양 · 친양자 · 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신분상태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임
-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안 제15조에 규정된 정보들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됨
- 신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였음. 즉, 본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람 및 교부가 필요함을 밝히도록 함
- 현행 호적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한 장의 증명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가 누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민감한 정보 자체를 분리하고 그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등록관련 제도가 가져야할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가장 확실하게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제17조 (가족증명원의 교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1.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2.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가족증명원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및 제16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발급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법취지

- 목적별 공부가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작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음
- 본인의 신분사항에 가족들의 이력사항까지 포함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가족임을 증명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렵다면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가족관계의 외부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적별 공부 이외에 가족증명원을 따로 둠
- 가족증명원의 작성은 미리 해당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아님
- 가족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부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하고, 공부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의 내용과 전산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증명원의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것임
- 전산시스템에는 가족증명원의 양식만을 둘 수 있을 뿐이며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미리 작성하여둘 수 없도록 함
- 가족증명원의 발급에 대해서는 안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제19조 (목적별 공부의 기재사항) ① 출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 등의 경우에도 출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부모의 성명, 3. 출생지, 4. 출생연월일,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혼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배우자의 성명, 3. 신고일자, 4. 신고인,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사망지, 3. 사망일자, 4. 사망사유,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인지, 입양, 파양, 개명, 성 변경, 국적회복 등의 경우 신분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본인의 성명, 2. 친부모의 성명, 3. 양부모의 성명, 4. 인지, 입양, 파양의 양태,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친양자의 경우에는 출생부의 기재로 신분변동을 갈음하며 친양자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법원의 기록으로 보존하되 신분변동부에 그 기록을 남길 수 없다.
- ⑥ 이혼 및 재혼 등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혼인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본인의 성명, 2. 이혼의 사유 및 이혼판결 또는 확인을 받은 법원, 3. 신고지, 4. 신고일자,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입법취지

- 각각의 목적별 공부에 기록되는 정보를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화하였음
- 특히 안 제19조는 본인식별을 위하여 그동안 사용되어오던 본적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음
- 법무부와 대법원은 본적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기준등록지라는 특정한 식별자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그러나 애초 본적지의 개념은 가(家)별 편제로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가(家)의 주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별로 작성되는 새로운 법률의 구조에는 전혀 불필요한 것임
- 본조 제5항은 친생자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친생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부상의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출생부로 대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보관된 기록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친생자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부당히 친생관계의 새로운 설정사실이 유출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
- 각각의 공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본 법의 취지와 개인정보의 범위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법률의 취지를 넘어서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제3장 신분에 관한 공부의 기재

제22조 (공부의 기록이 없는 자) 어떠한 공부에도 신분에 관하여 기록이 없는 사람이 새로 신분등록을 할 때 각 목적별로 새로운 공부를 편제한다.

○ 입법취지

- 현행 호적법 제3장에는 호적내의 기재순위(법 제16조), 신호적의 편제(법 제18조), 법정 분가(법 제19조의2), 무적자(법 제20조), 제적(법 제21조) 등의 규정이 있음
-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별편제의 호적법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규정들은 삭제되거나 일부 개정되어야 함
- 현행 호적의 무적자 조항과 관련하여 공부상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목적별로 새로운 공부를 편제하도록 하는 본 규정만을 존치시키며 다른 규정은 모두 삭제하였음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30조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신고사건
- 2. 신고의 연월일
- 3. 본인의 성명 · 출생연월일 · 주소
- 4. 신고인의 성명 · 출생연월일 · 주소 · 본인과 관계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신고에 관한 통칙규정의 대부분은 현행 호적법과 대동소이함
- 다만 본 조의 경우 현행 호적법과는 달리 본적과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삭제하였음. 그 취지는 앞의 설명과 동일함

제35조 (신고서의 제출) 2개소 이상의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공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고지의 시·읍·면의 사무소는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관계 시·읍·면의 사무소에 전송한다.

○ 입법취지

- 현행 호적법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 이상의 시읍면 사무소에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 신고대상 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본적지 외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따로 신고서 1통을 더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 그러나 호적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며 본 법안의 경우 전산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제2장 제 규정들에 의하여 현행 호적법과 같이 신고서를 복수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민원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제2절 출생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자의 성명 및 성별, 주소
-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3. 부모의 성명 및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참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법취지

- 호주제 폐지에 따라 출생신고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간소화 되었음

- 제51조 (신고의무자) ①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동거하는 친족
- 2. 분만에 참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입법취지

- 현행 호적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혼외 출생한 자녀의 신고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음. 특히 혼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신고인을 모(母)로 한정하고 있음(법 제51조제2항)
- 그러나 출생의 신고에 있어 혼인 중이나 혼외나에 따라 신고인을 별도로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혼외의 자녀라고 하여 모(母)만이 특히 신고인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음
- 특히 공부의 편제를 가(家) 단위로 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장에게 우선 부여하고 있는 현행 호적법과는 달리 본인 기준의 목적별 공부를 작성하는 상황에서는 출생의 여부가 신고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신고인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특히 모(母)로 한정할 필요가 없음
- 더불어 안 제62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부가 그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로 신고인 지정의 규정을 할 이유도 없음
- 따라서 출생의 신고는 혼인 중이거나 혼외이거나 구분 없이 부 또는 모가 하도록 규정함

제3절 인지

○ 현행 호적법과 큰 차이 없음. 신고내용의 간소화는 위의 경우와 같음

제4절 입양

- 제67조 (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민법」 제8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현행 호적법은 입양의 절차에서 특히 15세 미만인 양자를 입양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명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입양절차에 따라 신분관계의 변동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사항을 문서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함

제5절 파양

○ 현행 호적법과 큰 차이 없음. 신고내용의 간소화는 위의 경우와 같음

제6절 친양자

- 제73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제67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 입법취지

-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의 절차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민법 제908조제1항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친양자의 신고는 친생자의 출생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신고는 본 절의 절차에 따르되 공부상의 기재와 증명의 내용은 출생신고와 같이 이루어지게 됨
- 친양자의 신고는 입양의 신고에 준하여 이루어짐

제75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친양자를 파양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9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준용규정) 제7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입법취지

- 친양자의 파양은 양자의 파양에서와 같은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친양자의 파양은 협의에 의한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에 의한 파양만이 인정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제7절 혼인

제77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 출생연월일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3. 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근친이 아니라는 사실

② 혼인 중 출생하는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지 않기로 한 별도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민법의 개정에 따라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호주제와 가별 호적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혼인 신고의 기재사항도 매우 간략하게 변함
- 특히 자녀의 성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에 따라 혼인 신고시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성씨 결정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²⁾

2) 개정된 민법 제781조제1항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면서, 단서를 통해 “부모가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자녀의 성에 대한 결정권을 부모 합의에 의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차 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자녀의 성은 가족구성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즉하고 그 결정의 시점이 부부간 혼인 전으로 한정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법은 동조 제6항의 규정을 통해 자녀가 성장한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의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 안에서는 혼인신고 시에 부부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밖에 없었다.

제8절 이혼

제80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 입법취지

- 민법개정에 따라 이혼 이후 이루어졌던 복직, 친가부흥, 일가창립 등의 규정 일체가 삭제되었음
- 이혼 신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혼인변동부에 그 기록이 기재됨으로써 현행 호적법 제76조 제1항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의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음

제9절 친권 및 후견

- 현행 호적법과 큰 차이 없음. 신고내용의 간소화는 위의 경우와 같음

제10절 사망과 실종

- 현행 호적법과 큰 차이 없음. 신고내용의 간소화는 위의 경우와 같음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 현행 호적법과 큰 차이 없음. 신고내용의 간소화는 위의 경우와 같음

제12절 개명

- 현행 호적법과 큰 차이 없음. 신고내용의 간소화는 위의 경우와 같음

제5장 공부의 정정

- 현행 호적법과 큰 차이 없음. 신고내용의 간소화는 위의 경우와 같음

제6장 불복절차

○ 현행 호적법과 큰 차이 없음. 신고내용의 간소화는 위의 경우와 같음

제7장 벌칙

제116조 (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신원을 사칭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증명의 교부를 받은 사람
4. 기술적 수단 등을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신분등록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처리를 하는 사람

제117조 (벌칙) ① 공부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 및 제1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119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0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1조 (과태료) 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전산정보가 멸실·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 시·읍·면의 장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공부에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별 각 공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부 또는 제거된 공부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신분관련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③ 전 2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3조 (과태료의 재판) 제121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 입법취지

- 호적사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정보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사전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는데 주안을 둠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둠

※ 기타

- 현행 호적법 제4장제10절 호주승계 관련 조항 완전 삭제
- 현행 호적법 제4장제11절 입적과 복적 관련 조항 완전 삭제
- 현행 호적법 제4장제12절 일가창립 관련 조항 완전 삭제
- 현행 호적법 제4장제13절 분가 관련 조항 완전 삭제
- 현행 호적법 제4장제16절 전적과 취적 관련 조항 완전 삭제
- 제2장에 공부상의 기재 등에서 관하여 수기가 아닌 전산처리로 일원화함으로써 현행 호적법 제5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부분을 완전히 삭제
- 현행 제도 상의 등본 초본 등의 구분이 불필요해짐

□ 법률안 정비과정에서 남은 과제

○ 공부 양식의 결정

- 각각의 목적별 공부 양식은 대법원 규칙의 정비에 의하여 결정됨
-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별지서식의 공부 양식이 법률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본 법안의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의 경우 주민등록법 상으로는 신고사항이 매우 제한적이며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상의 별지서식에 의하여 부당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음. 행정기관은 언제나 행정효율을 위하여 더 많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손쉬운 식별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거나 유통하기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주목해야하는 것은 대법원 규칙에서 법률의 규정을 초월하는 형태의 공부양식이 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목적별 공부를 통한 신원확인 사유의 제한

- 현행 호적법의 경우 증명서로 이용되는 호적부를 등본과 초본으로 나누어 필요에 따라 교부토록 하고 있음
-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와 같이 호적등본을 이용하려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이 아무리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편법적으로 현재의 호적등본과 같은 수준의 증명서 교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법원 규칙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증명서 열람 및 교부의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신분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히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별첨 1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목적별 공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3조 (시·읍·면장과 신분관련 사건) ① 시·읍·면의 장은 신분등록에 관한 증명발급 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신분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에 관한 신분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신분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감독) ①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②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신분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구등의 신분에 관한 사무)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제6조 (수수료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신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 및 제123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제7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신분에 관한 공부

제9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작성) 출생, 사망 또는 혼인 등에 관한 공부 또는 그 변동에 관한 공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이를 작성한다.

제10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정리) ① 신분에 관한 공부는 신고의 순위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하여 보존한다.

② 신분에 관한 공부의 전산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전산정보의 송부) 신분에 관하여 새로운 편제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전산자료를 감독법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산정보의 보존 및 유출방지) ① 신분에 관한 공부의 전산정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② 신분에 관한 공부의 전산정보는 감독법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의 사무소 외의 장소에 보관·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 외의 자가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저장된 전산정보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기거나 저장된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지 못한다.

④ 전산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무소 밖으로 옮기거나 저장된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경우에 시·읍·면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읍·면의 장 및 제2항 단서에 의해 전산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전산정보가 멸실·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신분등록부 등을 처리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신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 설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분 관련 사무 처리의 지원 및 신분관련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출생·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청구인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해당 증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 안의 각 증서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및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각 증서에 등재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입양·파양·친양자·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증서는 다음 각호 이외에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다.

1. 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
2.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된 사항이나 교부된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가족증명원의 교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1.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2.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가족증명원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발급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목적별 공부와 그 종류) 각 공부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제한다.

1. 출생부
2. 혼인부
3. 사망부
4. 신분변동부
5. 혼인변동부

제19조 (목적별 공부의 기재사항) ① 출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 등의 경우에도 출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부모의 성명
3. 출생지
4. 출생연월일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혼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배우자의 성명
3. 신고일자
4. 신고인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사망지
3. 사망일자
4. 사망사유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지, 입양, 파양, 개명, 성 변경, 국적회복 등의 경우 신분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친부모의 성명
3. 양부모의 성명
4. 인지, 입양, 파양의 양태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친양자의 경우에는 출생부의 기재로 신분변동을 갈음하며 친양자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법원의 기록으로 보존하되 신분변동부에 그 기록을 남길 수 없다.

⑥ 이혼 및 재혼 등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혼인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이혼의 사유 및 이혼판결 또는 확인을 받은 법원
3. 신고지
4. 신고일자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 ①가족증명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2. 부모의 성명
3. 자식의 성명
4. 가족간의 관계
5. 구성원의 생년월일
6.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족증명원의 내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목적별 공부의 기록을 발췌하여 작성한다.

제3장 신분에 관한 공부의 기재

제21조 (목적별 공부의 기재절차) 각각의 목적별 공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22조 (공부의 기록이 없는 자) 어떠한 공부에도 신분에 관하여 기록이 없는 사람이 새로 신분등록을 할 때 각 목적별로 새로운 공부를 편제한다.

제23조 (공부의 정정) ① 공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공부정정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공부기재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공부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부의 기재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24조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과 공부)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기록사항을 경정해야 한다. 다만, 본인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정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공부와 서류의 인계) 시·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부 및 이에 관한 서류는 이를 당해 시·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6조 (신고의 장소) ① 신고는 신고사건의 발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 (출생·사망의 동예의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예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공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말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 (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
 4. 신고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본인과의 관계
-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

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32조 (동예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성명, 주소 및 증인이 된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35조 (신고서의 제출) 2개소 이상의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공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고지의 시·읍·면의 사무소는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관계 시·읍·면의 사무소에 전송한다.

제36조 (말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 말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신고서에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9조, 제77조 및 제80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

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제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주소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42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신고의 추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공부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기간경과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읍·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및 성별, 주소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의 성명 및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 없는 선박 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1조 (신고의무자) ①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제52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도착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주소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6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기아) ①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 읍, 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을 창설한 후 이름과 주소를 정하여 이를 출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부모가 기아를 찾을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출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제60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소(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주소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 및 그 주소
4.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64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입양

제66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주소

제67조 (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민법」 제8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파양

제69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주소

제70조 (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 민법 제8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 민법 제900조에 규정에 의한 협의상 파양에 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준용규정)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 및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친양자

제73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제67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친양자를 파양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9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준용규정) 제7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혼인

제77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 출생연월일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3. 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근친이 아니라는 사실
- ② 혼인 중 출생하는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지 않기로 한 별도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8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9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 이혼

제80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1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 (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절 친권 및 후견

제84조 (친권자변경신고)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6조 (후견인경질신고) ①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유언 또는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 (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

③ 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9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90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생년월일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사망지의 동장 또는 통·이장을 포함한다)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91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92조 (사변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주소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3조 (사형, 옥사)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소 중 사망한 자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 (전2조의 경우의 기재사항) 제92조 및 제93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8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 (인식불능자의 사망) ①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가 있는 후에 제90조 각항에 규정된 자가 사망자를 인식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 (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생년월일
2. 민법 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 제63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98조 (인지 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 (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은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의 연월일
2. 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
3.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 연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 관계
-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회복허가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
4. 국적을 회복한 사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회복한 사람과의 관계
-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1조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
3. 허가의 연월일
-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창성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이탈자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국적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로 본다.

제12절 개명

제104조 (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성의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
2. 변경한 성
3. 재판확정일

제5장 공부의 정정

제106조 (위법한 공부기재의 정정) 공부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7조 (무효인 행위의 공부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부의 기재를 하였으나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8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6조 및 제107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공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9조 (판결에 의한 공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공부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0조 (준용규정) 제26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공부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불복절차

제111조 (불복의 신청) ① 신분관련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2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①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3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4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15조 (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116조 (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신원을 사칭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증명의 교부를 받은 사람
4. 기술적 수단 등을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신분등록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처리를 하는 사람

제117조 (벌칙) ① 공부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 및 제1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119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0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1조 (과태료) 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전산정보가 멸실·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 시·읍·면의 장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공부에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별 각 공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부 또는 제거된 공부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신분관련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③ 전 2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3조 (과태료의 재판) 제121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별첨 2

**현행 호적법과
목적별공부예관법률(안) 조문대조표**

호적법	목적별공부예관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목적별 공부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3조 (시, 읍, 면장과 호적사건) ①시, 읍, 면의 장은 자기 또는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에 관한 호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호적사무에 관하여 시, 읍, 면의 장을 대리하는 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 (시·읍·면장과 신분관련 사건) ① 시·읍·면의 장은 신분등록에 관한 증명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신분에 관한 공부예를 같이 하는 사람에 관한 신분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신분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감독) ①호적사무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②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 (감독) ①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②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신분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구등의 호적사무)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제5조 (구등의 신분에 관한 사무)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제6조 (수수료등의 귀속)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2조의2제3항 및 제133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	제6조 (수수료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신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 및 제123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

<p>다.</p> <p>제7조 (사무비용)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2장 호적부</p> <p>제8조 (호적의 편제)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p> <p>제9조 (호적의 편철) 호적은 지번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p> <p>제10조 (원본과 부분, 그 보존) ①호적은 원본과 부분을 작성한다. ②원본은 시, 읍, 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분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새로 호적을 편제한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부분을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 (호적부의 반출금지) ①호적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 시, 읍, 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②호적부를 시, 읍, 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긴 때에는 시, 읍, 면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 (전산정보의 송부) 신분에 관하여 새로운 편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전산자료를 감독법원에 전송하여야 한다.</p> <p>제12조 (전산정보의 보존 및 유출방지) ①신분에 관한 공부의 전산정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②신분에 관한 공부의 전산정보는 감독법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의 사무소 외의 장소에 보관·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 외의 자가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저장된 전산정보는 전쟁·</p>	<p>다.</p> <p>제7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장 신분에 관한 공부</p> <p>제9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작성) 출생, 사망 또는 혼인 등에 관한 공부 또는 그 변동에 관한 공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이를 작성한다.</p> <p>제10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정리) ①신분에 관한 공부는 신고의 순위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하여 보존한다. ②신분에 관한 공부의 전산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1조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 설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분 관련 사무처리의 지원 및 신분관련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신분관련전산정보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출생·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호주 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p>
--------------------------------------------------------------------------------------------------------------------------------------------------------------------------------------------------------------------------------------------------------------------------------------------------------------------------------------------------------------------------------------------------------------------------------------------------------------------------------------------------------------------------------------------------------------------------------------------------------------------------------------------------------------------------------------------------------------------------------------------------------------------------------------------------------------------------------------------------------------------------------------------------------------------------------	-----------------------------------------------------------------------------------------------------------------------------------------------------------------------------------------------------------------------------------------------------------------------------------------------------------------------------------------------------------------------------------------------------------------------------------------------------------------------------------------------------------------------------------------------------------------------------------------------------------------------------------------------------------------------------------------------------------------------------------------------------------------------------------------------------------------------------------------------------------------------------------------------------------------------------------------------------------------------------------------------------------------------------------------------------------------------------------------------------------------------------------------------------------------------------------------------------------------------------------------------------

<p>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기거나 저장된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지 못한다.</p> <p>④ 전산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무소 밖으로 옮기거나 저장된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경우에 시·읍·면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시·읍·면의 장 및 제2항 단서에 의해 전산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전산정보가 멸실·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신분등록부 등을 처리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신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 설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분 관련 사무처리의 지원 및 신분관련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신분관련전산정보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출생·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청구인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해당 증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p>	<p>제1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등) 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호주 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p>
---------------------------------------------------------------------------------------------------------------------------------------------------------------------------------------------------------------------------------------------------------------------------------------------------------------------------------------------------------------------------------------------------------------------------------------------------------------------------------------------------------------------------------------------------------------------------------------------------------------------------------------------------------------------------------------------------------------------------------------------------------------------------------------------------------------------------------------------------------------------------------------------------------------------------------------------------------------------------------------------------------------------------------------------------------------------------------------------------------------------------------------------------------------------------------------------------------------------------------------------------------------------------------------------------------	----------------------------------------------------------------------------------------------------------------------------------------------------------------------------------------------------------------------------------------------------------------------------------------------------------------------

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본·초본 또는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시·읍·면의 장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제적자에 관한 기재의 등사를 생략하고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 안의 각 증서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및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각 증서에 등재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입양·파양·친양자·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증서는 다음 각호 이외에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다.

1. 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
 2.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된 사항이나 교부된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가족증명원의 교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1. 세계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2.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가족증명원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발급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목적별 공부와 그 종류) 각 공부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제한다.

1. 출생부
2. 혼인부
3. 사망부
4. 신분변동부
5. 혼인변동부

제19조 (목적별 공부의 기재사항) ① 출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 등의 경우에도 출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부모의 성명
3. 출생지
4. 출생연월일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혼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배우자의 성명
3. 신고일자
4. 신고인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사망지
3. 사망일자
4. 사망사유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지, 입양, 파양, 개명, 성 변경, 국적회복 등의 경우 신분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친부모의 성명
3. 양부모의 성명
4. 인지, 입양, 파양의 양태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친양자의 경우에는 출생부의 기재로 신분변동을 갈음하며 친양자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법원의 기록으로 보존하되 신분변동부에 그 기록을 남길 수 없다.

⑥ 이혼 및 재혼 등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혼인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이혼의 사유 및 이혼판결 또는 확인을 받은 법원
3. 신고지
4. 신고일자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 ①가족증명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p>제13조 (호적부의 재제, 보완) ①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때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재제, 보완 또는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p> <p>②제1항의 멸실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 (제적부) ①호주승계·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보존한다.</p> <p>②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장 호적의 기재</p> <p>제15조 (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와 내용과 연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제16조 (호적내의 기재순위) ①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주 2. 호주의 직계존속 3. 호주의 배우자 4.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5.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p>②직계존속간에 있어서는 세수가 먼 자를 선순위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족간에 있어서는 세수가 가까운 자를 선순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부모의 성명 3. 자식의 성명 4. 가족간의 관계 5. 구성원의 생년월일 6.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가족증명원의 내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목적별 공부의 기록을 발췌하여 작성한다.</p> <p>제3장 신분에 관한 공부의 기재</p>
-------------------------------------------------------------------------------------------------------------------------------------------------------------------------------------------------------------------------------------------------------------------------------------------------------------------------------------------------------------------------------------------------------------------------------------------------------------------------------------------------------------------------------------------------------------------------------------------------------------------------------------------------------------------------------------------------------------------------------------------------------------------------------------------------------------------------------------------------------------------------------------------------------------------------------------------------------------------------------------------------------------------------------------------------------------------------	-------------------------------------------------------------------------------------------------------------------------------------------------------------------------------------------------------------------------------------------------

<p>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p> <p>제17조 (호적의 기재절차) 호적은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p> <p>제18조 (신호적의 편제) ①호주승계·호주승계회복 기타 호주의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과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p> <p>제19조 삭제</p> <p>제19조의2 (법정분가) ①민법 제789조 본문에는 혼인신고가 있으면 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p> <p>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분적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 입양의 취소, 파양, 이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 2. 전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로서 혼인한 자가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한 때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 신분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호적의 호주로 될 자의 본적지를 신분적으로 한다.</p> <p>제20조 (무적자) 부 또는 모의 호적에 입적할 자를 제외하고 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새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때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p> <p>제21조 (제적)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 사망자, 실종신고를 받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도 또한 같다.</p> <p>제22조 (호적의 정정)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무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무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무가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p>	<p>제21조 (목적별 공부의 기재절차) 각각의 목적별 공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p> <p>제22조 (공부의 기록이 없는 자) 어떠한 공부에도 신분에 관하여 기록이 없는 사람이 새로 신분등록을 할 때 각 목적별로 새로운 공부를 편제한다.</p> <p>제23조 (공부의 정정) ① 공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공부정정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공부기재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p>
-----------------------------------------------------------------------------------------------------------------------------------------------------------------------------------------------------------------------------------------------------------------------------------------------------------------------------------------------------------------------------------------------------------------------------------------------------------------------------------------------------------------------------------------------------------------------------------------------------------------------------------------------------------------------------------------------------------------------------------------------------------------------------------------------------------------------------------------------------------------------------------------------------------------------------------------------------------------------------------------------------------------------------------------------------------------------------------------------------------------------------------------------------------------------------------------------------------	--------------------------------------------------------------------------------------------------------------------------------------------------------------------------------------------------------------------------------------------------------------------------------------------------------------------------------------------------------------------------------------------------------------------------------------------------------

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류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23조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과 호적) ①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는 정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재를 정정하여도 무방하다.

②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4조 (호적과 서류의 인계) 시·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호적 및 이에 관한 서류는 이를 당해 시·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5조 (신고의 장소) ①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출생·사망의 동예의 신고등) ①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동 의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본적지관할 시·읍·면의 장에 의 신고서의 송부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호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삭제

제26조 (신고후 본적이 판명된 때)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공부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부의 기재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24조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과 공부)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기록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다만, 본인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정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공부와 서류의 인계) 시·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부 및 이에 관한 서류는 이를 당해 시·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6조 (신고의 장소) ① 신고는 신고사건의 발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 (출생·사망의 동예의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 의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공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 (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호적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 및 호주의 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거가하여 타가에 입적하거나 기타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민법 제7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에 입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적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31조 (동의를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말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 (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
4. 신고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본인과의 관계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32조 (동의를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p>제32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33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성명, 주소 및 증인이 된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33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p>	<p>제34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p>
<p>제34조 (법령소정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기타 법령의 정하는 사항외에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5조 (제출할 신고서의 수) ①2개소 이상의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읍·면의 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외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신고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신고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35조 (신고서의 제출) 2개소 이상의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공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고지의 시·읍·면의 사무소는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관계 시·읍·면의 사무소에 전송한다.</p>
<p>제36조 (구술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구술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은 신고서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72조, 제76조 및 제79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6조 (말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 말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신고서에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9조, 제77조 및 제80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7조 (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p>	<p>제37조 (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8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8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40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p>	<p>제40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주소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p>
<p>제41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p>	<p>제41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p>
<p>제42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p>	<p>제42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p>
<p>제43조 (신고의 최고) ①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p>	<p>제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p>
<p>제44조 (신고의 추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p>	<p>제44조 (신고의 추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공부의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p>

<p>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5조 (기간경과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p>	<p>제45조 (기간경과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p>
<p>제46조 (사망후에 도달한 신고) ①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후라도 시,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46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47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 읍, 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7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읍·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8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시, 읍, 면의 장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8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시, 읍, 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절 출생</p>	<p>제2절 출생</p>
<p>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및 성별, 주소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의 성명 및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지</p>	<p>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p>

<p>서 이를 할 수 있다. ②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p>	<p>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p>
<p>제51조 (신고의무자) ①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혼인외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계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p>	<p>제51조 (신고의무자) ①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p>
<p>제52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2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3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53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54조 (항해중의 출생) ①항해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9조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p>	<p>제54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도착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주소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p>
<p>제55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5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6조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 ①출생의 신고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6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7조 (기아) ①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p>	<p>제57조 (기아) ①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p>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

③시, 읍, 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부모가 기아를 찾을 때) ①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제60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본적(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본적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과 본적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 관계
5.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본적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 ①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 읍, 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을 창설한 후 이름과 주소를 정하여 이를 출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부모가 기아를 찾을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출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제60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소(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주소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 및 그 주소
4.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64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입양

제66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①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로 된 자가 폐가하고 양자로 될 때에는 그 취지
5. 민법 제7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가에 입적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본, 출생연월일, 그 부모의 성명 및 양자와의 관계
6. 삭제
7. 삭제

②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양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삭제

제70조 삭제

제71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64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입양

제66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주소

제67조 (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민법」 제8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

<p>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5절 과양</p> <p>제72조 (과양신고의 기재사항) 과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 양자가 부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양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원인 및 장소. 그러나 생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p>제73조 (협의상 과양의 신고) 민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과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5절 과양</p> <p>제69조 (과양신고의 기재사항) 과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주소 <p>제70조 (협의상 과양의 신고) ① 민법 제8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과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과양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p> <p>③ 민법 제900조에 규정에 의한 협의상 과양에 대하여 후견인이 과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4조 (준용규정)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5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과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71조 (준용규정)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2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 및 과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6절 친양자</p> <p>제73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74조(준용규정) 제67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이를 준용한다.</p> <p>제75조(친양자의 과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친양자를 과양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9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6절 혼인</p> <p>제76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7.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p>②제19조의2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신분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③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p>	<p>다.</p> <p>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과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6조(준용규정) 제7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7절 혼인</p> <p>제77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3. 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근친이 아니라는 사실 <p>② 혼인 중 출생하는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지 아니기로 한 별도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6조의2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7조 삭제</p> <p>제78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7절 이혼</p> <p>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p>제78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8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9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8절 이혼</p> <p>제80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
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
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
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
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 (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7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 친권 및 후견

제82조 (친권자변경신고) ①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
경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
는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
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자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을 행
사할 자로 정하여진 자가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개시의 신
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
여야 한다.

제81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
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
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
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 (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절 친권 및 후견

제84조 (친권자변경신고)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월 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②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
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
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
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적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3.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4.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4조 (후견인경질신고) ①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
는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
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
나.

제85조 (유언 또는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선정) ①유
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
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
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 (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종료의 신
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및 본적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

③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
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9절 사망과 실종

제87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사망의 신고는
제88조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
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
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
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 (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6조 (후견인경질신고) ①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
는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
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
나.

③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유언 또는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선정) ① 유
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
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
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 (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종료의 신
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

③ 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
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9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90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
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생년월일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
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
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p>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89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p> <p>제90조 (사변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제91조 (사형, 옥사) ①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소중 사망한 자의 사체를 찾았을 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2조 (전2조의 경우의 기재사항) 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87조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93조 (본적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①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가 있는 후에 제88조에 계기한 자가 사망자를 인식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94조 (준용규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5조 (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p>	<p>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사망지의 동장 또는 통·이장을 포함한다)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91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p> <p>제92조 (사변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주소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제93조 (사형, 옥사)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소 중 사망한 자의 사체를 찾았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4조 (전2조의 경우의 기재사항) 제92조 및 제93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8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95조 (인식불능자의 사망) ①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가 있는 후에 제90조 각항에 규정된 자가 사망자를 인식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96조 (준용규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7조 (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p>
--------------------------------------------------------------------------------------------------------------------------------------------------------------------------------------------------------------------------------------------------------------------------------------------------------------------------------------------------------------------------------------------------------------------------------------------------------------------------------------------------------------------------------------------------------------------------------------------------------------------------------------------------------------------------------------------------------------------------------------------------------------------------------------------------------------------------------------------------------------------------------------------------------------------------------------------------------------------------------------------------------------------------------------------------------------------------------------------------------------------------------------------------------------	----------------------------------------------------------------------------------------------------------------------------------------------------------------------------------------------------------------------------------------------------------------------------------------------------------------------------------------------------------------------------------------------------------------------------------------------------------------------------------------------------------------------------------------------------------------------------------------------------------------------------------------------------------------------------------------------------------------------------------------------------------------------------------------------------------------------------------------------------------------------------------------------------------------------------------------------------------------------------------------------------------------------------------------------------------------------------------------------------------------------------------------

<p>한다. 1. 실종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민법 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3. 실종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실종자와의 관계 ③제63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p> <p>제10절 호주승계</p> <p>제96조 (호주승계신고) ①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승계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3.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본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본적의 표시 4.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포기자의 성명 및 본적 ③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이를 할 수 있다.</p> <p>제96조의2 (호주승계권포기신고) ①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호주승계개시의 원인과 연월일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의 관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1.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2.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3.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p> <p>제97조 삭제</p> <p>제98조 삭제</p> <p>제99조 삭제</p> <p>제100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호주승계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01조 (호주승계신고의 장소) 제96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도 할 수 있다.</p>	<p>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생년월일 2. 민법 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 제63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이를 준용한다.</p>
---------------------------------------------------------------------------------------------------------------------------------------------------------------------------------------------------------------------------------------------------------------------------------------------------------------------------------------------------------------------------------------------------------------------------------------------------------------------------------------------------------------------------------------------------------------------------------------------------------------------------------------------------------------------------------------------------------------------------------------------------------------------------------------------------------------------------------------------------------------------------------------------------------------------------------------------------------------------------------------------	------------------------------------------------------------------------------------------------------------------------------------------------------------

<p>제11절 입적과 복적</p> <p>제102조 (직계혈족입적) 민법 제784조, 제7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나 가족이 그 직계혈족을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입적할 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및 그 부모의 성명 3. 입적하게 하는 자와 입적하는 자와의 관계 4. 입적할 자의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p>제103조 (분가호주의 직계존속, 가족의 입적) 민법 제7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p>제104조 (기타의 입적) 제102조 및 제103조 이외의 입적 또는 복적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2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절 일가창립</p> <p>제104조의2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의 신고) ①부가 사망한 뒤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의 성명과 사망연월일 2. 친가에 복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가의 본적,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3. 일가를 창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일가창립의 장소 <p>②제1항의 신고는 복적지 또는 일가창립지에서도 할 수 있다.</p> <p>제105조 삭제</p> <p>제106조 (일가창립의 신고) 폐가·무후가의 가족은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일가창립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가·무후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2. 폐가·무후가된 원인과 연월일 3. 일가창립의 장소 4. 가족으로 될 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부모의 성 	
------------------------------------------------------------------------------------------------------------------------------------------------------------------------------------------------------------------------------------------------------------------------------------------------------------------------------------------------------------------------------------------------------------------------------------------------------------------------------------------------------------------------------------------------------------------------------------------------------------------------------------------------------------------------------------------------------------------------------------------------------------------------------------------------------------------------------------------------------------------------------------------------------------------------------------------------------------------------------------------------------------------------------------------------------------------------------------------------------------------------------------------------------------------------------------------------------------------------------------------------------------------------------------------------------------	--

<p>명</p> <p>제13절 분가</p> <p>제107조 (분가신고의 기재사항) ①분가의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가의 호주의 성명, 본, 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2. 분가의 호주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분가의 장소 3. 민법 제7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이 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p>②타시, 읍, 면으로 분가하려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제108조 삭제</p> <p>제14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p> <p>제109조 (인지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3.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p>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9조의2 (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화허가의 연월일 2. 귀화전에 가졌던 국적 3.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5.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귀화한 자와 	<p>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p> <p>제98조 (인지 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p>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9조 (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은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화허가의 연월일 2. 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 3.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 관계 <p>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	--------------------------------------------------------------------------------------------------------------------------------------------------------------------------------------------------------------------------------------------------------------------------------------------------------------------------------------------------------------------------------------------------------------------------------------------------------------------------------------------------------------------------------------------------------------------------------------------------------------------------------------------------------------------------------------------------------------------------------

<p>의 관계</p> <p>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10조 (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회복허가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 4.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5.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6. 국적을 회복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회복한 자와의 관계 <p>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0조 (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회복허가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 4. 국적을 회복한 사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회복한 사람과의 관계 <p>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11조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①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적지·주소지 또는 본적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과 본 3. 허가의 연월일 <p>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창성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1조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 3. 허가의 연월일 <p>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창성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12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상실의 신고는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상실자의 성명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p>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112조의2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적이탈자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p>	<p>제102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상실자의 성명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p>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103조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이탈자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p>

<p>첨부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 및 국적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로 본다.</p> <p>제15절 개명</p> <p>제113조 (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p>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첨부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및 국적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로 본다.</p> <p>제12절 개명</p> <p>제104조 (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p>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6절 전적과 취적</p> <p>제114조 (전적신고) ①전적하려는 때에는 신분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 읍 또는 면내에서의 전적은 이를 할 수 없다.</p> <p>②시, 읍, 면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본문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p>	<p>제105조(성의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전의 성 2. 변경한 성 3. 재판확정일
<p>제115조 (전적신고의 장소) 전적의 신고는 전적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p> <p>제116조 (취적신고) ①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신고서에는 제15조에 기재한 사항외에 취적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17조 (취적신고의 장소) 취적의 신고는 취적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p> <p>제118조 (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취적허가의 재판을 얻은 자가 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p>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19조 (판결에 의한 취적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 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에는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판결확정일 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호적의 정정

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 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 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 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제122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20조 및 제121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3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 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 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 (준용규정)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 내 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 조의 규정은 호적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2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감독법원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시·읍·면의 장은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4조의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의 작성

제5장 공부의 정정

제106조 (위법한 공부기재의 정정) 공부의 기재가 법 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공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부의 정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7조 (무효인 행위의 공부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부의 기재를 하였으나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8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6조 및 제107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공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9조 (판결에 의한 공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 여 공부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 람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부의 정정을 신청하 여야 한다.

제110조 (준용규정) 제26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2 조,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 정은 공부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등) ①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 하는 경우에 호적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자기테 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호적사 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 한 호적을 축적하여 호적부로 하고,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제적(제적)을 축적하여 제적부로 한 다.

③ 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제11조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감독법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 의 사무소외의 장소에 보관·관리할 수 있으며,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시·읍·면의 장이 보 관·관리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 외의 자가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보 관·관리하는 자는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 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의4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 략) ①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 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 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 는 경우에 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목적으로 교부하거 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 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 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에 대하 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호적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의5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의 지원 및 호 적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의6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124

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및 제적부에 기록된 호적사항에 관한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불복절차

제125조 (불복의 신청) ①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26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①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7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28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29조 (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6장 불복절차

제111조 (불복의 신청) ① 신분관련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2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①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3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4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15조 (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116조 (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30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1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32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30조 및 제

2.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신원을 사칭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증명의 교부를 받은 사람

4. 기술적 수단 등을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신분등록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처리를 하는 사람

제117조 (벌칙) ① 공부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 및 제1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119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0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1조 (과태료) 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전산정보가 멸실·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 시·읍·면의 장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공부에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별 각 공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부 또는 제거된 공부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신분관련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③ 전 2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119조 및 제

<p>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등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p>	<p>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등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123조 (과태료의 재판) 제121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p>	
<p>제134조 (벌칙) ①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p>	
<p>제8장 시행규칙</p>	
<p>제135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다음으로닭은여성연대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 언니네트 워크 / 여성해방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공무원 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 센터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 권운동모임 <끼리끼리>

※ 인권단체연석회의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 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 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3개 인권단체)

국회의원 노회찬 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2호
☎ 02-784-1727 / 팩스 02-788-3712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가칭)에 대한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 법학부)

I.

호주제폐지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법무부안, 대법원안, 목적별안이라고 알고 있다. 이 모두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별이 아닌 개인별 편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법무부안과 대법원안이 유사한 안이라고 본다면 이제 대법원안, 목적별안으로 좁혀진다. 발제자는 이 두 안을 비교검토한 바가 있다. 이 두 안은 모두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점점 그 개인 신분의 등록과 증명의 구체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안의 차이점은 목적별안이 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무의 관장을 시·읍·면의 장에 두고 있는 점 등 그 이외에도 다수가 있다(총15개, 발제자의 비교표참조). 그러나 발제자는 “대법원안과 목적별안이 충돌하는 가장 분명한 지점이 신분등록의 편제방식”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¹⁾. 이는 결과적으로 어느 안이 편제방식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있는가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과제는 개인존엄, 양성평등, 개인정보보호, 적절한 공시,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원칙을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함에 동의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이것은 다시 말해 개인의 신분이 공시되어지고 증명되어질 때, 그 목적에 알맞은 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정보가 공부안에 함께 기재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됨을 막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회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과도 결부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최상인가를 보다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

1)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방향과 내용.26면.

일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충돌지점인 편제방식, 공시방법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하고자 한다.

II. 인적편제, 사건별편제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신분등록의 편제방식도 인적편제와 사건별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인적편제는 한 개인의 인간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편제한 방식이다. 대법원안은 이 방식에 의한 것이다. 목적별안은 사건별 편제방식으로 사건별은 한 개인의 인간사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한 편제한 방식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러한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한 인간의 일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는 사건은 출생, 사망 그리고 혼인으로 본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대법원안은 우선은 개인정보가 총집중된 상태에서 시작한다. 개인의 인생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는 개인정보 탱크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 편제방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인정보 탱크가 철저히 보호 되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안은 제12조²⁾에 신분등록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 지방에서 보내져온 신분등록이 총체적으로 관리됨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관리소’는 굉장한 정보의 집중이다. 이것이 나쁘게 의도된다면, 관리소는 순간에 폭파될 수도 있고, 정보가 집중되었으니 정보의 수집도 손쉽고, 개인정보는 쉽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전산망이 해킹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이와는 달리 목적별안의 사건별편제는 개인의 신분등록이 위와 같이 집중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으며, 한 장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

2) 제12조(신분등록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등)신분등록부등의 보관, 관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신분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신분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신분등록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목적별안은 그 목적에 따라 공부를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가족증명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를 두고 여기서 다시 출생증서, 출생증명서, 혈통증명서로 혼인부는 혼인증명서, 사망부는 사망증명서로 파생되어 발급되고 혼인한 부부에게는 가족부가 작성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 그러나 신분등록이 처음부터 집중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서 두 안의 차이점은 대법원안은 처음은 집중시켜놓고 나중에 목적별로 분리하자는 것이고, 목적별안은 처음부터 분리시켜 놓는 것이다. 전산화와 관련하여 목적별안 전산화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제12조에서는 전산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시읍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안과는 달리 정보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안이나 목적별안이 등록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증명발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안은 모두 목적별 증명발급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II. 신분증명방법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증명서의 공시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이다. 이는 공시된 증명서가 적절한 요구에 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는 달리 무관한 정보를 유출하도록 하고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안의 제15조는 이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신분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다. 목적별안은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가족증명원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은 우선은 각각의 큰그릇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담는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안처럼 처음부터의 집중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출생부에는 출생과 관련된 사항, 출생시일, 성명, 성별, 입양, 친양자, 친생부모, 성전환으로 인한 성의 변경, 우리민법에서 性변경(자의복리에 의한), 인지, 파양, ..), 혼인부에는 혼인과 관련된 사항, 배우자, 배우자의 생년월일...혼인소멸, 이혼, 한배우자의 사망, 혼인취소..) 사망부,- 사망관련사항, 계속해서 가족부

에는 혼인한 사람에게 작성되는 공부 가족사항..., 부부, 자녀, 등..(독일에서는 가족부의 비경제성을 들어 폐지하려고 하며, 혼인부를 변형하여 가족부를 절충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큰몇가지의 그릇에 담긴 것은 작은 그릇으로 분류된다. 필요한 목적에 따라, 즉, 이들은 목적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큰 그릇에 담긴 정보를 보기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요건이 따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증명서발급을 통한 증명으로 충분할 것이다.

신분등록이란 한 개인이 그 나라 국민임을 증명해 주며, 또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 주고 그 사람의 가족구성원들 간의 지위, 그리고 가족법적인 지위를 결정해 준다. 이에 개인신분의 특성들에는 나이, 출생(혈통), 성별, 가족상의 신분 등이 있다. 나이나 성별은 출생일로 혹은 출생으로 확정되고 성명은 부모가 혼인시 결정한다. 가족법적인 지위로는 혈통은 누가 자녀의 부모이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 간의 친족관계를 어떠한 것인가를 표시해 준다. 신분상 지위는 개인이 미혼, 기혼, 이혼, 사별 혹은 혼인소멸, 등의 여부를 표시해 준다.

개인의 특성과 가족법적인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는 공부에 등록되어야 증명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증명에 있어서 불필요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산화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나온 안들도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관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도출되지 않은 증명서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는 이상적이다. 전산화와 관련하여 그 증명서를 개인정보보호에 적합하게 최소한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지않을까? 대법원안에서의 증명서 발급도 정보가 필요이상으로 유출되는 증명서가 있다.

목적별안에서는 예를 들어 출생부의 공부에서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고 있다. 나의 출생년월일을 증명하는데,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려야 하는가? 그럴필요가 있는 증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출생년월일을 증명하는데, 부모의 성명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자녀라면 즐겁기도 하겠지만, 알려진 범죄인의 자녀라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이며, 차별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혼인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혼인과 관련하여 목적별안에서 혼인부는 혼인상태만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마치 서구식의 혼인부(혼인변동부)와 혼인증명서(혼인부)가 서로 이름을 달리했을 뿐 그 기능은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서구식 혼인부에는 혼인과 혼인관련변동사항들이 차례로 기록된다. 그러나 발급받을 수 있는 혼인증명서에는 단지 혼인여부를 증명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내용면에서 이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안은 혼인증명서에 이혼 사항도 들어간다. 혼인상태를 증명하는데, 이혼내역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혼인여부를 증명하면 되는 경우, 누군가 이혼하여 다시 혼인한 경우, 새 혼인부가 작성되고, 혼인상태의 증명이 필요할 때 현재의 혼인부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때 과거의 이혼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3번 이혼한 내역이 있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혼인여부증명에 들어나지 않는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혼인부와 출생부, 사망부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다시 분류되어 증명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보는 대부분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다. 제16조에 의하면 변동부의 열람은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변동부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다시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공부를 열람하게 됨으로 오히려 많은 정보가 집중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양자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자의 신분등록교부열람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15조에서는 출생, 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 열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 다만 청구사유를 밝히고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면 교부대상을 너무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열람 교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15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출생·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청구인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해당 증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 안의 각 증서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및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각 증서에 등재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입양·파양·친양자·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증서는 다음 각호 이외에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다.

1. 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

2.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된 사항이나 교부된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혼외자 혼중자의 출생신고를 구분할 필요없음(차별적 요소)

자녀의 성결정

아무런 합의없을 시 부성

합의있을 시 “모의 성사용에 대한 취지내용”을 확정 명기하라는 것은 모성합의의 장애적 요인으로 불필요함.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충분)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토론편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유경희

1.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배경

- 04년 12월 2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 대안 제출 요구
- 05년 2월 3일 호주제 위헌 확정
- 05년 3월 2일 국회 민법개정안 통과
호주제(호주 중심의 가족구성, 호주를 통한 신분 증명) 폐지
민법 제4편 친족부분 '호주와 가족' 에서 ->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 민법개정안의 가족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로 규정.
- 호적법을 대체하는 신분등록법의 필요성
호적제도: 정상가족 상정,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개인 신분 증명.
성차별, 사생활 침해, 가족 형태 차별 등의 문제점.
*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동법 17조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존중 명시.
- =>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관리대상(국가적 필요성)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 필요성에 의한 신분(개인적 필요성) 확인을 위한 공적인 정보 등록 제도이어야 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개인의 존재, 신분변동사항 기록,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선에서 마련 필요.

2.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 취지: 개인의 신분 관련 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류, 변동되는 사건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목적: 개인의 존엄성· 양성평등 실현/ 개인정보 보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관리/ 다양한 가족형태 보호
- 주요내용
사무관장은 지방자치관할, 감독은 가정법원, 시행관련 사항은 대법원 규칙.
본인을 기준으로 한 목적별 공부작성

신분공부, 변동공부, 가족증명원의 열람교부기준 별도 규정
친양자제도의 절차규정 설치
본적, 주민번호 규정 삭제
본 개념 삭제

[긍정적인 면]

- 1> 개인정보 보호 : 공부의 구분(신분·혼인·사망 분리) 및 열람·교부 제한 규정
필요시 가족증명원 작성·교부-법적·혈연관계 확인 절차 유지
목적별 편제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 수집, 관리 활용)
주민등록번호와의 연동 금지
(행정 효율성보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으로 사생활 보호에 가치 부여)
- 2> 성평등 지향 :
본적 폐지- 남성중심의 '가'단위 편제. 기준인을 부모 설정하여 부계 계승(자의父가입적, 처의夫가입적 유지) 부부미혼자녀 동일 본적에.
출생 신고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인에 대한 규정 삭제, 출생 여부의 신고가 중요.
(현행 호적법에는 혼외의 자녀의 경우 신고인을 모로 한정하고 있음)
- 3>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 가족의 현실 고려(비혼모, 사실혼, 한부모가족, 독신, 비혈연공동체 등에 대한 차별 엄존 현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 탈피)
- 4> 개인의 주체성 강조 : 가족을 통한 신분확인이 아닌 독립적 개인의 신분.
차별에 대한 근거를 없앴

[수정 및 보완점]

-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 (20조) 관련
'정상가족' 형태의 가족관계 기재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부모·자식의 성명
->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원칙에 배치
*** 가족증명원이 필요한 사항(세금공제, 상속 등...)에 맞게 선택하여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의 필요.
- 혼인과 이혼 시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기재 (77조 2항, 80조 2항) 관련
-> 혼인·이혼 시 부모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한가?
(호적법의 내용에서 부모의 성명과 본적을 수정한 것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다 판단).

*** 목적별공부예관한법률(안)의 한계**

민법에 규정된 혈연중심의 가족범위, 사회복지 체계의 기본 단위가 가족(혼인·혈연·입양 중심 가족 형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등...)중심이며 다양한 가족형태 보호라는 목적별법안의 원칙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목적별공부안은 신분등록사항의 공시에서 취약하다. 공시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공시의 원칙을 지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목적별공부예관한법률(안) 이후의 과제

1> 현 시점에서 공부양식은 대법원 규칙에 의해 정비·결정되는 바 목적별공부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하며, 공부양식의 제작·증명서 열람 및 교부의 조건도 법률규정을 초월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가족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가야 한다. 국민적 정서로 일컬어지는 전형적 '정상가족'의 틀 유지에 대한 재해석과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인정하고, 권리보장으로 연결 가능성을 위한 홍보와 설득의 필요성이 있다.

3> 혈연 가족의 견고한 폐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혈연중심에서 벗어난 돌봄과 유대가 가능한 공동체적 연대애의 존중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4> 혈연관계 안에서의 상속 및 부양·돌봄이 전제된 상속법, 세법, 사회복지법등에 대한 보완, 개정이 요구된다.

5> 개인의 신분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상의 사회 현상, 가족관계에 의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관행은 바뀌어져야 한다. □